

상환과 해를 따온 정치

양이원영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 E: yangyi.assembly@gmail.com | T: 02-784-8834 | F: 02-6788-6740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정치부, 여성가족부 등)	날짜: 2023년 9월 27일(수)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전설아 비서관 010-7584-2013)	총 분량: 6쪽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 “한부모 가정, 매달 양육비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 어려운 경우 많아... 신속한 양육비 확보 위해 채무자 동의 없는 재산조회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없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만큼, 신속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양이원영 의원

찬 성 자 : 양이원영·유정주·신현영

박성준·김주영·강민정

이탄희·용혜인·이동주

김태년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전
체가구 소득대비 58.8%의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체가구 대비 낮은
실정이며,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를 “제공을”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생략)</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u>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 단서에 따라</u>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제공을</u> ----- ----- ----- ----- ----- ----- ----- ----- -----</p> <p>-----. <u><단서 삭제></u></p> <p>③ <u>제2항에 따라</u>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대통령령 -----

----- . <단서 삭제>